

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

자 치 법 규 명	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발전 기본 조례(안)		
평 가 담 당	(소속) 감사담당관	(직급) 행정9급	(성명) 박미애
입 안 주 무 부 서	가정복지과	통 보 (조 치) 일	2016. 1. 28.
관 련 조 문	검 토 결 과	조 치 사 항	
<p>제14조(성별영향분석평가) 구청장은 조례 제정·개정 시 양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·평가(이하 "성별영향분석평가"라 한다)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	<p>• 개선권고 I 조례(안)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을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 제6조(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)를 준용할 것을 권고</p> <p>- 관련조례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제6조(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)①구청장은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제5조에 따른 성별 영향 분석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 다만,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.</p>	<p>해당조례는 상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(개념)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며,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조례의 하위법령 개념인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것임</p>	

관련 조문	검 토 결 과	조 치 사 항
	<p>1.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</p> <p>2.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</p> <p>3. 「지방재정법」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</p> <p>②제1항에도 불구하고...(후략)</p> <p>- 조례(안)제14조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에 “조례 제개정 시”라는 단서조항이 있어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」 제6조에서 규정한 평가 대상의 범위와 상이</p> <p>- 따라서, 관련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평가대상의 범위와 일원화하여 조례 내용 규정에 통일성 부여</p>	

관련 조 문	검 토 결 과	조 치 사 항
<p>제17조(성인지 교육)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 해당하는 법령, 정책,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(이하 "성인지 교육"이라 한다)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.</p>	<p>II. 조례(안)제17조 성인지 교육의 대상을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 제13조(성인지 교육 대상, 내용 및 방법 등)를 준용할 것을 권고</p> <p>- 관련법령 「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」제13조(성인지 교육대상, 내용 및 방법 등)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에게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및 양성평등 정책 전담전문인력 2.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<p>.....(후략)</p> <p>- 시행령에서 교육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기속규정하고 있으나, 조례(안)제17조에서는 “소속 공무원 등”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교육대상에 재량을 부여</p> <p>- 따라서, 기속규정을 재량규정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음</p>	<p>해당조항의 소속공무원은 광진구 전체 공무원을 지칭하는 것이며, 시행령에서는 양성평등 정책 담당공무원을 명시한 것임.</p>